

② 긴급식품권지원

〈표 4-74〉 장애유형별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긴급식품 권지원	매우 필요	응답	175	6	29	9	219
		%	39.2	18.2	32.6	52.9	37.4
	필요	응답	175	10	32	3	220
		%	39.2	30.3	36.0	17.6	37.6
	그저그렇다	응답	70	12	26	5	113
		%	15.7	36.4	29.2	29.4	19.3
	불필요	응답	20	4	2	0	26
		%	4.5	12.1	2.2	0.0	4.4
	전혀 불필요	응답	6	1	0	0	7
		%	1.3	3.0	0.0	0.0	1.2
	전체	응답	446	33	89	17	58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구직활동비보조

〈표 4-75〉 장애유형별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구직활동 비보조	매우 필요	응답	206	11	29	6	252
		%	46.9	30.6	33.3	31.6	43.4
	필요	응답	140	13	24	10	187
		%	31.9	36.1	27.6	52.6	32.2
	그저그렇다	응답	73	9	21	3	106
		%	16.6	25.0	24.1	15.8	18.2
	불필요	응답	11	2	10	0	23
		%	2.5	5.6	11.5	0.0	4.0
	전혀 불필요	응답	9	1	3	0	13
		%	2.1	2.8	3.4	0.0	2.2
	전체	응답	439	36	87	19	58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표 4-76〉 장애유형별 세금, 공과금 감면, 면제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세금,공 과금 감 면, 면제	매우 필요	응답	262	17	49	9	337
		%	59.7	48.6	55.1	47.4	57.9
	필요	응답	122	14	26	7	169
		%	27.8	40.0	29.2	36.8	29.0
	그저그렇다	응답	41	2	12	1	56
		%	9.3	5.7	13.5	5.3	9.6
	불필요	응답	10	2	2	2	16
		%	2.3	5.7	2.2	10.5	2.7
	전혀 불필요	응답	4	0	0	0	4
		%	0.9	0.0	0.0	0.0	0.7
	전체	응답	439	35	89	19	58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 4-77〉 장애유형별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타지역 구인정보 제공	매우 필요	응답	175	13	22	3	213
		%	41.0	40.6	26.5	18.8	38.2
	필요	응답	138	8	24	7	177
		%	32.3	25.0	28.9	43.8	31.7
	그저그렇다	응답	82	11	25	5	123
		%	19.2	34.4	30.1	31.3	22.0
	불필요	응답	23	0	9	1	33
		%	5.4	0.0	10.8	6.3	5.9
	전혀 불필요	응답	9	0	3	0	12
		%	2.1	0.0	3.6	0.0	2.2
	전체	응답	427	32	83	16	55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장애우를 위한 의료대책

〈표 4-78〉 장애인별로 응답한 의료대책의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한 것	실업권 의료보험기간 유형별 11에서 2년까지	응답 %	29 6.4	3 8.1	5 5.5	0 0.0	37 6.2
	월의료보험료 50%감면	응답 %	103 22.7	15 40.5	21 23.1	4 22.2	143 23.8
	보장료보조금 채널 및 심리상담	응답 %	80 17.6	7 18.9	21 23.1	4 22.2	112 18.7
	간급의료비 지원	응답 %	133 29.3	8 21.6	29 31.6	8 44.4	178 29.7
	보장구 무료제 공 및 수리	응답 %	94 20.7	4 10.8	8 8.8	1 5.6	107 17.8
	기타	응답 %	15 3.3	0 0.0	7 7.7	1 5.6	23 3.8
	전체	응답 %	454 100.0	37 100.0	91 100.0	18 100.0	600 100.0

⑦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새로운 정부의 실업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는 데 그에 대한 장애우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를 볼 때 우선 긴급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우가 84.0%, 정신지체장애우가 83.4%로 그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고 이외에도 시각장애우 78.1%, 청각 및 언어장애우 75.8% 등으로 나타났다.

긴급식품권에 대하여는 지체장애우가 78.4%, 시각장애우가 68.6%, 정신지체가 70.5%, 그에 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48.5% 만이 각기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구직활동비를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여 정신지체의 경우는 84.2%나 이를 지적하였는가하면, 지체장애우 78.8%, 청각 및 언어장애우 66.7%, 시각장애우 60.9% 등으로 나타났다. 제세공과금 및 세금등의 감면에는 더욱 그 필요성을 나타내어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88.6%는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구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물론 강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의료대책 중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월의료보험료의 50% 감면이나 긴급의료비의 지원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외에도 보장구의 무료제공 및 수리도 지체장애우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①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 4-79〉 장애인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대책 에 대한 의견	생활안정대책보 다는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	응답 %	148 31.2	14 36.8	20 21.7	6 28.6	188 30.0
	고용유지보다는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	응답 %	327 68.8	24 63.2	72 78.3	15 71.4	438 70.0
	전체	응답 %	475 100.0	38 100.0	92 100.0	21 100.0	626 100.0

②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 4-80〉 장애인별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고용안정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 그램의 확대	응답 %	35 15.3	2 10.5	6 26.1	1 14.3	44 15.8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 및 확충	응답 %	27 11.8	3 15.8	1 4.3	0 0.0	31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응답 %	97 42.4	10 52.6	9 39.1	6 85.7	122 43.9
	기업 고용안정 지원	응답 %	22 9.6	3 15.8	3 13.0	0 0.0	28 10.1
	개인의 사업 자금 융자	응답 %	47 20.5	1 5.3	3 13.0	0 0.0	51 18.3
	기타	응답 %	1 0.4	0 0.0	1 4.3	0 0.0	2 0.7
	전체	응답 %	229 100.0	19 100.0	23 100.0	7 100.0	278 100.0

③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 4-81〉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안정 대책 중 중요	공공근로사업	응답 17	1	2	1	21	
	%	4.4	3.8	2.6	5.6	4.2	
	고용보험 대상	응답 5	0	0	0	5	
	확대 및 제공	%	1.3	0.0	0.0	1.0	
	의료보험료	응답 18	1	4	0	23	
	50%지원	%	4.7	3.8	5.3	4.6	
	생활보호확대	응답 149	12	36	7	204	
	%	38.8	46.2	47.4	38.9	40.5	
	생계비대부	응답 57	5	17	4	83	
	사업확대	%	14.8	19.2	22.4	22.2	16.5
	장애인관련	응답 91	3	10	4	108	
	서비스 확충	%	23.7	11.5	13.2	22.2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40	4	7	2	53	
	%	10.4	15.4	9.2	11.1	10.5	
	노숙자 보호	응답 2	0	0	0	2	
	%	0.5	0.0	0.0	0.0	0.4	
	각종상담	응답 4	0	0	0	4	
	%	1.0	0.0	0.0	0.0	0.8	
기타	응답 1	0	0	0	1		
%	0.3	0.0	0.0	0.0	0.2		
전체	응답	384	26	76	18	50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국 장애우의 대부분은 실효성없는 고용유지정책보다는 확실한 생활안정사업을 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청각 및 언어장애우에게 있어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체장애우는 개인의 사업자금 융자쪽을,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기업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시각장애우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쪽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대책으로는 생활보호확대를 모든 유형의 장애우가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서비스의 확대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비대부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제 5 장 성별 실태 조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및 실직전 상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분포

〈표5-1〉 성별 분포

항 목	유형별	전 체	'98 실업자 조사	
				응답
성 별	남자	응답	516	-
		%	76.6	67.0
	여자	응답	158	-
		%	23.4	33.0
전 체	응답	674	-	
	%	100.0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전체 응답자 674명 중 76.6%에 해당되는 516명이며, 여성이 나머지 23.4%인 158명에 이른다. 이는 일반실업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아 그 상대분포비가 67.0%대 33.0%인 것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본 조사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장애우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실직자로 분류할 때의 출현율이 더 낮음은 당연하다고 해석된다.

② 연령분포

〈표5-2〉 성별 연령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연 령	10대	응답	1	0	1	
		%	0.2	0	0.1	
	20대	응답	36	13	49	
		%	7.0	8.2	7.3	
	30대	응답	115	42	157	
		%	22.5	26.6	23.5	
	40대	응답	187	41	228	
		%	36.6	25.9	34.1	
	50대	응답	114	34	148	
		%	22.3	21.5	22.1	
	60대 이상	응답	58	28	86	
		%	11.4	17.7	12.9	
	전 체		응답	511	158	669
			%	100.0	100.0	100.0

p = .099

본 조사에서 실직장애우의 평균 연령은 45.6세이며 남성장애우의 경우 45.3세, 여성장애우의 경우 46.3세로 여성이 약간 고령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답치를 그대로 해석하면, 남성장애우는 연령대별 분포에 있어서 40대에 전체의 36.6%가 분포되어있고 30대와 50대에 22.5%, 22.3%씩 분포되어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장애우는 30대, 40대 및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또한 60대에는 여성장애우가 남성장애우보다 더 많은 분포도를 보임도 알 수 있다.

③ 학력분포

〈표5-3〉 성별 학력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연 령	무학	응답	63	42	105
		%	12.4	26.9	15.8
	초등졸	응답	136	41	177
		%	26.7	26.3	26.6
	중졸	응답	144	37	181
		%	28.2	23.7	27.2
	고졸	응답	138	26	164
		%	27.1	16.7	24.6
	전문대 이상	응답	29	10	39
		%	5.7	6.4	5.9
전 체		응답	510	156	666
		%	100.0	100.0	100.0

p = .000

조사자의 학력을 성별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우가 저학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장애우는 26.9%인 42명이 무학인 반면 남성장애우는 12.4%만이 이에 해당할 뿐이다. 반면 고졸이상 학력의 경우는 남성이 32.8%, 여성이 23.1%를 각기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성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정도가 낮아 취업기회를 맞거나 직업훈련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자료로서 여성실직장애우의 대책을 각별히 수립 해야 함을 말해준다.

④성별 거주지 분포

〈표5-4〉 성별 거주지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거주지 특성	대도시	응답	247	70	317
		%	48.0	44.6	47.2
	중소도시	응답	176	64	240
		%	34.2	40.8	35.7
	농·어·산촌	응답	92	23	115
		%	17.9	14.6	17.1
전 체		응답	515	157	672
		%	100.0	100.0	100.0

p = .289

조사대상인 실직장애우들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있다. 전체의 82.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운데 남성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고르게 거주한다. 이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도시거주자가 주류를 이룬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직장애우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기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농촌에 있는 실직장애우의 문제를 간과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각종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설의 분포를 볼 때나 장애우 재가서비스의 실태를 보아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농촌에 있는 장애우의 재활이나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도 장애우계의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⑤ 성별 장애유형 분포

〈표5-5〉 장애유형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장애 유형	지체	응답 398 % 77.4	105 66.5	503 74.9
	청각및언어	응답 33 % 6.4	10 6.3	43 6.4
	시각	응답 64 % 12.5	37 23.4	101 15.0
	정신지체	응답 19 % 3.7	6 3.8	25 3.7
	전 체	응답 514 % 100.0	158 100.0	672 100.0

p = .009

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물론 지체장애이며 이는 남성 및 여성 실직장애우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설문대상자에게 있어서 남성장애우 가운데 77.4%가 지체장애인인 반면 여성장애우는 66.5%가 이에 속한다. 반면 여성장애우의 경우는 시각장애우가 많아 전체 응답자의 23.4%이고 반면 남성장애우는 시각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에 그친다. 대신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그 분포비중이 남·녀장애우 모두에게 비슷하게 나타났다.

⑥ 장애등급별 분포

〈표5-6〉 성별 장애등급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계
		남성	여성	
장애 등급	1급	응답 159 % 31.5	63 40.1	222 33.6
	2급	응답 128 % 25.4	44 28.0	172 26.0
	3급	응답 108 % 21.4	29 18.5	137 20.7
	4급	응답 63 % 12.5	15 9.6	78 11.8
	5급	응답 28 % 5.6	5 3.2	33 5.0
	6급	응답 18 % 3.6	1 0.6	19 2.9
전 체	응답 504 % 100.0	157 100.0	661 100.0	

p = .099

응답대상자가 실직장애우 가운데에서도 저소득계층인 이유로 장애등급별로 볼 때 1,2,3급 장애인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이들 1,2,3급 장애우의 합계가 전체 응답자의 80.3%를 차지한다. 남성 및 여성 실직 장애우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각기 그 비중이 78.3%, 86.6%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실직장애우의 장애정도가 더 심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여성실직장애우의 경우 그 존재상태가 훨씬 열악하여 교육의 정도도 낮을뿐더러 장애의 정도도 더 심한 상태로 취업전선에 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장애우의 실업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말하여 주는 결과이다.

⑦ 결혼상태

〈표5-7〉 성별 결혼상태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결 혼 상태	미혼	응답	150	37	187
		%	29.2	23.6	27.9%
	기혼	응답	294	65	359
		%	57.2	41.4	53.5
	이혼	응답	37	18	55
		%	7.2	11.5	8.2
	사별	응답	15	32	47
		%	2.9	20.4	7.0%
	별거	응답	18	5	23
		%	3.5	3.2	3.4%
전 체	응답	514	157	671	
	%	100.0	100.0	100.0	

p = .006

실직장애우의 절반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상태이지만 미혼의 비중도 27.9%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는 기혼이 전체 여성응답자의 41.4%에 그치며,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 비중이 57.2%에 이른다. 또한 여성의 경우 사별이 전체 응답 여성의 20.4%를 차지하여 남성의 2.9%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사별을 포함하여 이혼과 별거까지 함께 고려하면 여성은 응답자의 35.1%, 남성은 13.6%로 각기 나타나 여성장애우가 결혼은 했으나 현재 배우자없이 홀로 가계를 이끌어 가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직장애우중 저소득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경우 가구주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⑧ 가구원수 분포

〈표5-8〉 성별 가구원수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가 구 원 수	1인	응답	51	28	79
		%	10.0	18.4	12.0
	2-3인	응답	225	74	299
		%	44.2	48.7	45.2
	4-6인	응답	211	47	258
		%	41.5	30.9	39.0
	7인이상	응답	22	3	25
		%	4.3	2.0	3.8
	전 체	응답	509	152	661
		%	100.0	100.0	100.0

p = .006

실직장애우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는 2-3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평균적으로 45.2%가 여기에 해당하나 4-6인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39.0%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남성응답자의 41.5%가 이 정도의 가구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신가구로는 남성의 경우 10.0%, 여성의 경우 18.4%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응답자로 보면 12.0%가 된다.

결국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으로서 이중 남성실직장애우는 3.6명, 여성은 3.0명으로 각기 나타난다. 이는 여성 실직자가 미혼과 사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원 내지 부양자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㉑ 가구원 중 장애우 수 분포

〈표5-9〉 성별 가구원중 장애우 수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장애가족 수(본인 포함)	1인	응답	271	94	365
		%	53.2	61.0	55.1
	2인	응답	161	40	201
		%	31.6	26.0	30.3
	3인	응답	67	18	85
		%	13.2	11.7	12.8
	4인	응답	8	2	10
		%	1.6	1.3	1.5
	5인이상	응답	2	0	2
		%	0.4	0.0	0.3
전 체	응답	509	154	663	
	%	100.0	100.0	100.0	

p = .491

응답한 장애우가 속한 가구에는 그외에도 또다른 장애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의 44.9%가 이와 같은 경우이며, 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46.8%, 여성의 경우 39.0%로 나타난다. 가구당 장애인 평균수는 1.62명, 남성의 경우 1.64명, 여성의 경우 1.53명으로 나타나 남성 장애우의 경우가 가구내 또다른 장애우가 있을 확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내 3인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남성은 15.2%, 여성의 경우도 13.0%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남성 가구와 여성가구간에 장애인 수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㉒ 가구주 여부

〈표5-10〉 성별 가구주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가구주 여부	가구주	응답	363	85	448
		%	70.6	55.2	67.1
	가구주	응답	151	69	220
		%	29.4	44.8	32.9
전 체	응답	514	154	668	
	%	100.0	100.0	100.0	

p=.000

응답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는 전체의 67.1%가 되고 여성의 경우는 55.2%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구주로서의 생계책임을 지는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는 대부분 소득원이 자신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보호가 따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㉓ 주택소유 형태

〈표5-11〉 성별 주택소유형태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주 소 유 형태	자가	응답	113	23	136
		%	22.1	14.7	20.4
	전세	응답	86	22	108
		%	16.8	14.1	16.2
	월세	응답	84	26	110
		%	16.4	14.1	16.5
	영구임대	응답	181	64	245
		%	35.4	41.0	36.7
	기타 ¹⁾	응답	48	21	69
		%	9.4	13.5	10.3
	전 체	응답	512	156	667
		%	100.0	100.0	100.0

p = .154

주: 1) 친척집 및 무상거주 등이 해당함.

저소득 실업장애우는 일반적으로 자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으며, 표에 의하면 자가인 경우가 20.4%에 해당하여 나머지 79.6%는 전세나 월세 등 타인 소유의 주택에 기거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조사자의 14.7%만이 자가소유의 주택에 기거하며 영구임대주택에 4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직여성장애우의 주거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②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5-12〉 성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	예	응답	301	91	392
		%	58.6	58.0	58.4
	아니오	응답	213	66	279
		%	41.4	42.0	41.6
전 체		응답	54	157	671
		%	100.0	100.0	100.0

p = .483

조사응답자의 58.4%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나타나며, 남성장애우와 여성장애우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응답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율이 58.6%, 58.0%로 각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현재상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 실제로 장애우의 경제적 여건과 결부시켜 볼 때 과연 생활보호가 필요한 실직장애우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지 여부는 이로부터는 전혀 알 수 없다. 즉, 적절한 생활보호상의 혜택이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 아래의 분석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2) 실직자의 실직전 취업상태

이 부분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실제 취업경험이 있던 자들 중심으로 설문하여 얻은 결과이다. 즉 응답자 가운데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취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만성적 실업자 260명을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342명, 남성 응답자 전체의 66.3%이고, 여성의 경우 72명, 45.6%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직 전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 414명에 제한하여 응답을 유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5-13〉 성별 실직자유형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가구주 여부	IMF형 실직자	응답	17	117	134
		%	23.6	34.2	32.4
	IMF이전 실직자	응답	55	225	280
		%	76.4	76.4	67.6
전 체		응답	72	342	414
		%	100.0	100.0	100.0

p = .049

① 실직 기간

〈표5-14〉 성별 실직기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 직 기 간	6개월미만	응답	5	29	34	
		%	6.9	8.5	8.2	
	6개월~ 1년미만	응답	8	46	54	
		%	11.1	13.5	13.0	
	1년~ 2년미만	응답	16	96	112	
		%	22.2	28.1	27.1	
	2년~ 5년미만	응답	18	69	87	
		%	25.0	20.1	21.0	
	5년~ 10년미만	응답	14	53	67	
		%	19.5	15.5	16.2	
	10년이상	응답	11	49	60	
		%	15.3	14.3	14.5	
	합계		응답	72	342	414
			%	100.0	100.0	100.0

p = .154

직장을 잃은 실직장애우의 경우 실직기간은 평균 56.7개월이며 여성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63.4개월로서 약 5년이상이 된 상태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55.3개월이 되었으며 IMF 구제금융기에 해당하는 1년미만의 경우 여성실직자는 18.0%, 남성실직자는 22.0%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실직자의 실직기간이 긴 것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이들이 실업기간동안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고통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취한 분류방식으로서 98년 1월을 기점으로 그후에 실직한 자를 'IMF형 실직자', 이전 실직자를 'IMF 이전 실직자'로 할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실적전 임금근로자 유무

〈표5-15〉 성별 실적전 임금근로자 유무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적전 임금 근로자 여부	예	응답	57	241	298
		%	81.4	71.7	73.4
	아니오	응답	13	95	108
		%	18.6	28.3	26.6
전 체		응답	70	336	406
		%	100.0	100.0	100.0

p=.061

실직 여성장애우의 경우 임금근로자 출신은 전체의 81.4%에 해당한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여성장애우가 비임금근로자로서 일할 만큼 다채로운 직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표5-16〉 성별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임금 근로자 종사형태	정규직	응답	25	121	146
		%	45.5	50.4	49.5
	임시직	응답	17	41	58
		%	30.9	17.1	19.7
	일용직	응답	13	78	91
		%	23.6	32.5	30.8
전 체		응답	55	240	295
		%	100.0	100.0	100.0

p = .057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실직자의 경우 45.5%만이 정규직이었으며 나머지 54.5%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중 임시직은 전체의 30.9%, 일용직은 2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실업자의 경우 66.8%가 정규직이었다는 결과나 남성장애우실직자 중 50.4%가 정규직이었다는 통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우가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에 처해있었으므로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④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표5-17〉 성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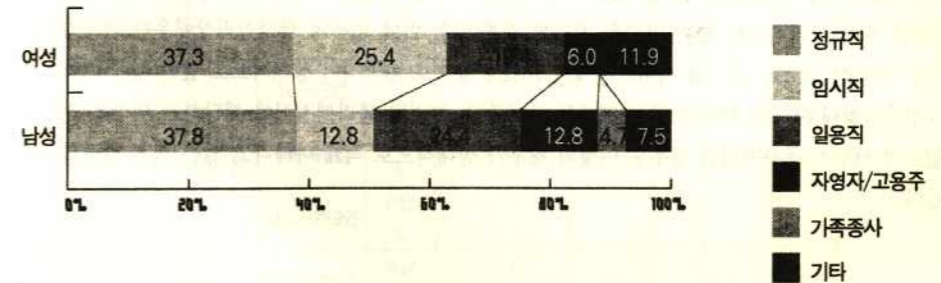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비임금 근로자 종사형태	자영업자/ 고용주	응답	4	41	45
		%	33.3	51.3	48.9
	무급가족 종사자	응답	0	15	15
		%	0.0	18.8	16.3
기타	응답	8	24	32	
	%	66.7	30.0	34.8	
전 체		응답	12	80	92
		%	100.0	100.0	100.0

p = .031

비임금근로자인 상태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는 응답자 가운데 모두 92명인데, 여성장애우 12명 가운데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인 경우는 4명, 기타 종사형태는 8명으로 분류된다. 이는 남성 장애우의 경우에 비하여 자영업자나 고용주였던 비율이 현격히 적은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국 장애우 100명의 실직자 가운데 실적전의 근로형태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37명, 남성이 38명, 임시직으로 여성 26명, 남성 13명, 일용직으로 여성 19명, 남성 24명,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로 여성 6명, 남성 13명,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 0명, 남성 5명, 그리고 기타로 여성 12명, 남성 8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은 임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남성은 일용직과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로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볼 때 다음과 같다.

〈그림 4-1〉 실업장애우 남녀 100명의 고용구조



⑥ 실직전 직종

〈표5-18〉 성별 실직전 직종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 전직종	전문가, 기술자	응답	11	39	50
		%	15.5	11.6	12.3
	관리·행정직	응답	0	6	6
		%	0.0	1.8	1.5
	사무직	응답	6	21	27
		%	8.5	6.2	6.6
	서비스판매직	응답	12	48	60
		%	16.9	14.2	14.7
	농업, 어업	응답	1	14	15
		%	1.4	4.2	3.7
	기능직	응답	12	87	99
		%	16.9	25.8	24.3
	단순직	응답	25	90	115
		%	35.2	26.7	28.2
	노점, 직판	응답	1	14	15
		%	1.4	4.2	3.7
	기타	응답	3	18	21
		%	4.2	5.3	5.1
전 체	응답	71	337	408	
	%	100.0	100.0	100.0	

p = .154

실직 여성장애우의 실직전 직종은 단순직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직도 16.9%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이다. 이에 비하여 남성실직장애우는 단순직 26.7%, 기능직 25.8%, 그리고 서비스판매직 14.2% 등으로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하면 여성실직장애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관리행정직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혀 없으며 사무직 종사자였던 경우도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⑥ 실직전 업종

〈표5-19〉 성별 실직전 업종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 전업종	서비스업	응답	37	174	113
		%	52.9	51.9	52.1
	제조업	응답	33	139	172
		%	47.1	41.5	42.5
	농림어업	응답	0	22	22
		%	0.0	6.6	5.4
전 체	응답	70	335	405	
	%	100.0	100.0	100.0	

p = .139

실직전 업종의 측면에서는 남성 및 여성장애우 모두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많고 여성장애우에게 있어서 농업종사자는 전혀 없는 반면에 남성장애우는 6.6%가 농림어업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⑦ 실직전 직장의 규모

〈표5-20〉 성별 실직전 직장의 규모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 직 기 간	5인미만	응답	28	12	149
		%	40.0	37.0	37.5
	5~9인	응답	10	58	68
		%	14.3	17.7	17.1
	10~29인	응답	19	61	80
		%	27.1	18.7	20.2
	30~99인	응답	6	48	54
		%	8.6	14.7	13.6
	100~299인	응답	3	19	22
		%	4.3	5.8	5.5
	300인 이상	응답	4	20	24
		%	5.7	6.1	6.0
	전체	응답	70	327	397
		%	100.0	100.0	100.0

p = .488

실직전 종사하던 사업장의 규모는 남성과 여성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념할 사실은 여성장애우의 경우 5인미만에 전체의 40%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남성장애우의 경우 37.0%가 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100인 이상 기업에는 여성이 10.0%이므로 남성의 12.0%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은 소규모기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다.

⑧ 실직전 직장의 수입

〈표5-21〉 성별 실직전 직장의 수입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응답	11	31	42
		%	16.9	9.7	11.0
	30~50만원 미만	응답	24	56	80
		%	6.9	17.6	20.9
	50~100만원 미만	응답	28	141	169
		%	43.1	44.3	44.1
	100~150만원 미만	응답	2	57	59
		%	3.1	17.9	15.4
	150~200만원 미만	응답	0	21	21
		%	0.0	6.6	5.5
	200~250만원 미만	응답	0	4	4
		%	0.0	1.3	1.0
	250만원 이상	응답	0	8	8
		%	0.0	2.5	2.1
	전 체	응답	65	318	383
		%	100.0	100.0	100.0

p = .015

실직전 임금의 분포는 실직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임금의 구매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金的 절대치 자체가 그다지 유용성있는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평균임금수준은 721,527원인데 비하여 여성실직 장애우는 457,923원에 그쳐 여성의 경우 임금측면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실직자와 비교할 때 실직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여성장애우의 임금조건이 남성에 비하여 매우 열악했던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여성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자는 전무한 상태이나 남성의 경우 10.4% 정도나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만원 미만의 경우 여성장애우는 53.8%, 남성장애우는 27.3%가 되어 여성장애우의 저임금수준이 뚜렷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⑨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표5-22〉 성별 실직전 직장의 취업기간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 직 기 간	1년미만	응답	11	27	38
		%	15.9	8.7	10.0
	1~5년 미만	응답	34	126	160
		%	49.3	40.5	42.1
	5~10년 미만	응답	915	59	68
		%	13.0	19.0	17.9
	10~15년 미만	응답	8	41	49
		%	11.6	13.2	12.9
	15~20년 미만	응답	1	20	21
		%	1.4	6.4	5.5
	20년이상	응답	6	38	44
		%	8.7	12.2	11.6
전 체	응답	69	311	380	
	%	100.0	100.0	100.0	

p = .137

장애우실직자들이 실직전 이전직장에 근무한 평균기간은 85.9개월이었음에 비하여 여성실업장애우는 65.6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남성실업장애우는 90.5개월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던 데 비하여 실직기간은 더 길어 근로기회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실업장애우가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구체적으로 보아 여성실업장애우는 취업기간 5년미만에 65.2%가 집중되어있고 남성의 경우는 49.2%에 불과하다. 대신 15년이상 취업하였던 경우는 여성 10.1%, 남성 18.6%로서 남성실업장애우가 장기간 취업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⑩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표5-23〉 성별 실직 당시의 퇴직금 수령여부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퇴직금 수령여부	받음	응답	13	80	93
		%	19.1	24.4	23.5
	못받음	응답	5	15	20
		%	7.4	4.6	5.1
	없음	응답	28	106	134
		%	41.2	32.3	33.8
	해당사항없음	응답	22	127	149
		%	32.4	38.7	37.6
전 체		응답	68	328	396
		%	100.0	100.0	100.0

p = .328

실직자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장애우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23.5%에 불과한 데 그중 여성실직장애우에 있어서 실직기간의 생활비로 충당될 수 있는 퇴직금 수령여부를 설문한 결과 퇴직금을 받은 자는 전체의 19.1%이며, 나머지는 못받았거나 아예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의 경우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24.4%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여성장애노동자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또한번 볼 수 있다.

⑪ 실직 이유

〈표5-24〉 성별 실직이유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 직 이 유	직장의파산, 폐업, 휴업	응답	6	62	68
		%	8.6	18.7	17.0
	해고, 권고사직, 명퇴	응답	9	48	57
		%	12.9	14.5	14.2
	건강, 고령으로	응답	26	98	124
		%	37.1	29.6	30.9
	일거리없음	응답	19	67	86
		%	27.1	20.2	21.4
	근무환경이 나빠서	응답	5	10	15
		%	7.1	3.0	3.7
기타(교통사고 등장애발생시)	응답	5	46	51	
	%	7.1	13.9	12.7	
전체		응답	70	331	401
		%	100.0	100.0	100.0

p = .58

실직이유로는 실직장애우의 경우 건강이나 고령 등 주관적인 이유가 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의 사유나, 일거리가 없는 등의 객관적 이유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아직도 장애우의 경우 직장을 중심으로 한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여성장애우는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된 경우가 37.1%로서 남성에 비하여 7.5% 포인트 더 많으며, 또한 일거리가 없어서 자연히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남성에 비하여 6.9%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으로 인한 경우는 남성이 18.7%로서 여성의 8.6%보다도 더 많으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는 각기 14.5%, 12.9%로서 거의 같다.

㉔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표5-25〉 성별 장애로 인한 실직 여부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장애때문 에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되었나?	예	응답	5	18	13
		%	62.5	39.2	42.6
	아니오	응답	2	15	17
		%	25.0	28.3	27.8
잘모르겠다	응답	1	13	14	
	%	12.5	32.5	29.6	
전 체	응답	8	46	54	
	%	100.0	100.0	100.0	

p = .401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장애우 가운데 장애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비율은 높아서 42.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 실직장애우의 경우는 8명 중 5명이 장애로 인한 해고 또는 사직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46명 중 18명으로서 39.2%에 해당하여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장애가 실직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실직장애우의 경우는 직장을 잃게 되었음을 장애와 여성이라는 사유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쉽게 짐작하게 해 준다.

2. 실직후 상태

1)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① 실직후 건강의 변화

〈표5-26〉 성별 실직후 건강의 변화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실직후 건강변화	매우 그렇다	응답	20	107	127
		%	29.0	34.7	33.7
	그런 편이다	응답	23	70	93
		%	33.3	22.7	24.7
	잘 모르겠다	응답	18	87	105
		%	26.1	28.2	2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6	29	35
		%	8.7	9.4	9.3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2	15	17
		%	2.9	4.9	4.5
전 체	응답	69	308	377	
	%	100.0	100.0	100.0	

p = .443

실직후 건강의 변화를 경험한 여성실직자들은 전체의 62.3%에 달한다. 반면 건강상 변화를 느끼지 않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1.6%에 불과하여 실직여성들의 건강문제에 상당한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각각의 경우에 58.4%, 13.8%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건강의 변화정도가 약간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5-27〉 성별 실직후 장애정도의 변화 여부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후 장애정도 변화	매우 그렇다	응답	12	81	93
		%	18.8	26.6	25.
	그런 편이다	응답	19	65	84
		%	29.7	21.4	22.8
	잘 모르겠다	응답	16	67	83
		%	25.0	22.0	22.6
그렇지 않다	응답	12	62	74	
	%	18.8	20.4	20.1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5	29	34	
	%	7.8	9.5	9.2	
전 체	응답	64	304	368	
	%	100.0	100.0	100.0	

p = .154

실직후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실감한 여성장애우는 48.5%로서 변화를 느끼지 않은 여성 장애우가 26.6%인 것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남성실직장애우의 경우 각기 48.0%, 29.9%의 응답이 나온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성별에 따라 응답상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③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표5-28〉 성별 실직후 스트레스 심화 정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심화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31	167	198
		%	47.7	52.7	51.8
	그런 편이다	응답	24	106	130
		%	36.9	33.4	34.0
	잘 모르겠다	응답	4	36	40
		%	6.2	11.4	10.5
그렇지 않다	응답	5	2	7	
	%	7.7	0.6	1.8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	6	7	
	%	1.5	1.9	1.8	
전 체	응답	65	317	382	
	%	100.0	100.0	100.0	

p = .002

여성장애우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실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는 9.2%만이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86.1%, 2.5%로 각 경우에 대한 응답치를 보여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좀더 심한 것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실직장애우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표5-29〉 성별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정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34	235	269
		%	50.0	71.0	67.4
	그런 편이다	응답	28	77	105
		%	41.2	23.3	26.3
	잘 모르겠다	응답	6	16	22
		%	8.8	4.8	5.5
그렇지 않다	응답	0	2	2	
	%	0.0	0.6	0.5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0	1	1	
	%	0.0	0.3	0.3	
전 체	응답	68	331	399	
	%	100.0	100.0	100.0	

p = .012

당연히 실직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심하여 응답여성장애우의 91.2%가 생계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대답하였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한 사람의 장애우도 응답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남성장애우의 경우는 94.3%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관도가 워낙 크므로 실직장애우의 경제적 지원이 긴요함을 보여주는 데는 차이가 없다 하겠다.

⑤ 실직후 부채 증가의 정도

〈표5-30〉 성별 실직후 부채증가의 정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13	88	101
		%	21.0	29.8	28.3
	그런 편이다	응답	20	82	102
		%	32.3	27.8	28.6
	잘 모르겠다	응답	15	57	72
		%	24.2	19.3	0.2
	그렇지 않다	응답	11	52	63
		%	17.7	17.6	17.6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3	16	19
		%	4.8	5.4	5.3
	전 체	응답	62	295	357
		%	100.0	100.0	100.0

p = .660

부채의 증가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실직 여성장애우의 53.3%가 증가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2.5%에 불과하였다. 이는 남성의 57.6%, 23.0%와 비교할 때 특별히 성별 간에 응답의 차이는 없다고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실직시 절반 이상의 가구가 당장 부채를 통하여 소비지출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용자제도 등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⑥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표5-31〉 성별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악화 정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부부 또는 가족관계 악화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9	56	65
		%	15.8	20.3	19.5
	그런 편이다	응답	11	72	83
		%	19.3	26.1	24.9
	잘 모르겠다	응답	20	69	89
		%	35.1	25.0	26.7
	그렇지 않다	응답	11	56	67
		%	19.3	20.3	20.1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6	23	29
		%	10.5	8.3	8.7
	전 체	응답	57	276	333
		%	100.0	100.0	100.0

p = .486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 상의 부정적인 변화도 비교적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응답가구의 35.1%가 그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하였으며, 29.8%만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가구중 1가구는 실직으로 인한 고통이 가족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에 있음을 보여줌으로 실직가정의 상담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성실직장애우와 비교하였을 때는 46.4%, 28.6%로 각기 나타나므로 남성가구주들이 가정내 관계악화를 인식하는 정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⑦ 자녀 교육비 감소 정도

〈표5-32〉 성별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 성	남 성		
자녀 교육비 감소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20	90	110
		%	37.0	34.9	35.3
	그런 편이다	응답	17	74	91
		%	31.5	28.7	29.2
	잘 모르겠다	응답	8	39	47
		%	14.8	15.1	15.1
그렇지 않다	응답	7	34	41	
	%	13.0	13.2	13.1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2	21	23	
	%	3.7	8.1	7.4	
전 체	응답	54	258	312	
	%	100.0	100.0	100.0	

p = .154

실직 장애우 가정의 자녀교육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응답자의 반응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여성장애우의 경우 감소를 체감한 경우는 응답자의 68.5%수준에 이르며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16.7%에 불과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자녀 교육비 지출의 변화에 둔감하여 63.6%만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감소하지 않은 경우로 21.3%가 응답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자녀 교육비의 감소로 인한 부모로서의 고충과 갈등의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⑧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표5-33〉 성별 실직후 가족의 건강악화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여 성	남 성		
실직후 아픈가족 발생유무	예	응답	21	153	174
		%	33.9	47.7	45.4
	아니오	응답	41	168	209
		%	66.1	52.3	54.6
전 체	응답	62	321	383	
	%	100.0	100.0	100.0	

p = .031

실직후 가족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되었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응답한 여성장애우의 33.9%가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실직은 가족내의 건강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47.7%가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장애우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실직이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들의 종합적 평가

〈표5-34〉 실직이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의 성별 반응

항 목 유형별	건강악화	장애심화	스트레스 심화	생계어려움 가중	부채증가	가족관계 악화	자녀교육 비감소	가족들 건강 악화
여 성	2.23	2.67	1.79	1.59	2.53	2.90	2.15	1.66
남 성	2.27	2.65	1.66	1.36	2.41	2.70	2.31	1.51
전 체	2.26	2.65	1.68	1.40	2.43	2.74	2.28	1.55
p값	0.807	0.894	0.308	0.007**	0.474	0.285	0.396	0.046*

주 : 1) 위의 평균값은 5분위 척도인 경우 '매우 그렇다' = 1, '그런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로 계산하여 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질문에 대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2분위 척도인 경우는 '그렇다' = 1, '그렇지 않다' = 2로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가족들 건강악화'의 경우만 2분위 척도에 의한 질문이다.

2) * : 95% 수준에서 유의적임. ** : 99%수준에서 유의적임.

이들 평균값의 차이로 질문에 대한 성별 응답의 강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건강의 악화, 자녀교육비 감소 등에 대하여 악화되는 것을 호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장애심화, 스트레스심화, 생계어려움가중, 부채증가, 가족관계 악화, 가족건강 악화 등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단, 생계어려움의 가중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를 제외하면 통계학적으로 말하는 엄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남성의 경우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더 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성장애우가 가구주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업 하의 생활 실태

① 생계유지 수단

〈표5-35〉 성별로 본 생계유지수단 실업장애우의 주택소유 형태

항 목	유형별	생계수단으로 가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가. 본인의 근로소득	전체	111	16.5	563	83.5	674	100.0
	여 성	27	17.1	31	82.9	158	100.0
	남 성	84	16.3	432	83.7	516	100.0
나. 타가원의 근로소득	전체	185	27.4	489	72.6	674	100.0
	여 성	46	29.1	112	71.9	158	100.0
	남 성	139	26.9	377	73.1	516	100.0
다.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전체	16	2.4	658	97.6	674	100.0
	여 성	2	1.3	156	98.7	158	100.0
	남 성	14	2.7	502	97.3	516	100.0

(뒤에서 계속)

항 목	유형별	생계수단으로 가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라. 저축	전체	83	12.3	591	87.7	674	100.0
	여성	14	8.9	144	91.1	158	100.0
	남성	69	13.4	447	86.6	516	100.0
마. 친지의 지원	전체	136	20.2	538	79.8	674	100.0
	여성	29	18.4	129	81.6	158	100.0
	남성	107	20.7	409	79.3	516	100.0
바.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전체	110	16.3	584	83.7	674	100.0
	여성	30	19.0	128	81.0	158	100.0
	남성	80	15.5	436	84.5	516	100.0
사. 이자 등 재산소득	전체	13	1.9	661	98.1	674	100.0
	여성	3	1.9	155	98.1	158	100.0
	남성	10	1.9	506	98.1	516	100.0
아. 실업급여	전체	29	4.3	645	95.7	674	100.0
	여성	11	7.0	147	93.0	158	100.0
	남성	18	3.5	498	96.5	516	100.0
자. 빚을 얻어	전체	109	16.2	565	83.8	674	100.0
	여성	23	14.6	135	85.4	158	100.0
	남성	86	16.7	430	83.3	516	100.0
차. 이웃의 도움	전체	73	10.8	601	89.2	674	100.0
	여성	20	12.7	138	87.3	158	100.0
	남성	53	10.3	463	89.7	516	100.0
카. 정부보조금	전체	35	52.2	322	47.8	674	100.0
	여성	82	51.9	76	48.1	158	100.0
	남성	270	52.3	246	47.7	516	100.0
타. 정부의 대부사업	전체	21	3.1	653	96.9	674	100.0
	여성	4	2.5	154	97.5	158	100.0
	남성	17	3.3	499	96.7	516	100.0
파. 공공근로사업	전체	61	9.1	613	90.9	674	100.0
	여성	13	8.2	145	91.8	158	100.0
	남성	48	9.3	468	90.7	516	100.0
하. 직업훈련수당	전체	11	1.6	663	98.4	674	100.0
	여성	4	2.5	154	97.5	158	100.0
	남성	7	1.4	519	98.6	516	100.0

주) 복수응답을 허용함.

실업여성장애우에게 있어서 현재의 소득중단 또는 소득격감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정부의 보조금이다. 전체 여성실업응답자의 51.9%, 남성실업응답자의 52.3%가 정부보조금이 자신 가구의 주요 생계수단이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다음으로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친지의 도움, 종교기관 및 사회기관의 도움, 자신의 근로소득 순으로 주요생계수단으로 나열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여타 공식실업대책이었던 대부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수당 및 실업급여 등을 믿을만한 생계유지수단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실직 장애우의 경우 결국 민간의 자발적인 구호수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공공부조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인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도움받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을 말한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실직여성장애우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5-36〉 성별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현재 개인 소득	없음	응답	41	146	187
		%	26.1	29.0	28.3(28.3)
	10만원 미만	응답	26	88	114
		%	16.6	17.5	17.2(45.5)
	10~30 만원 미만	응답	58	165	223
		%	36.9	32.7	33.7(79.2)
	30~50 만원 미만	응답	26	65	91
		%	16.6	12.9	13.8(93.0)
	50~70 만원 미만	응답	15	27	32
		%	3.2%	5.4	4.8(97.8)
	70~90 만원 미만	응답	0	10	10
		%	0.0	2.0%	1.6(99.4)
	90만원 이상	응답	1	6	4
		%	0.6	0.6	0.6(100.0)
	전 체	응답	157	504	661
		%	100.0	100.0	100.0

p = .372. ()안은 누적비중임.

저소득 실업장애우에 있어서 조사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전체의 28.3%,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 26.1%, 남성의 경우 29.0%로 각기 나타난다. 또한 월10만원정도 개인소득이 확보되는 자는 전체 여성응답자의 16.6%, 남성응답자의 17.5%에 해당하였다. 이때 개인소득이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단체나 친지로부터의 원조 및 기타 소득 등을 통틀어 말한다. 소득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누적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응답자의 79.2%, 이 중 여성실업장애우는 전체의 79.6%, 남성 79.2%에 각각 달하여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③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표5-37〉 성별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분포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현재 총가구 소득	30만원 미만	응답	85	274	359
		%	59.4	58.4	58.5(58.5)
	30~50 만원 미만	응답	40	128	168
		%	28.0	27.3	27.5(86.0)
	50~99 만원 미만	응답	14	58	72
		%	9.8	12.4	11.8(97.8)
	100~150 만원 미만	응답	3	8	11
		%	2.1	1.7	1.8(99.6)
	150~200 만원 미만	응답	0	1	1
		%	0.0	0.2	0.2(99.8)
	200만원 이상	응답	1	0	1
		%	0.7	0.0	0.2(100.0)
	전체	응답	143	469	612
		%	100.0	100.0	100.0

p=.502. ()안은 누적비중임.

가구총소득 역시 저수준에 머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구소득이 30만원을 넘지 않는 장애가구는 전체의 58.5%, 이 중 남성장애우가구 58.4%, 여성장애우가구 59.4%에 이르며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월 5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로 볼 때 전체가구의 86.0%에 이르므로 가구원수가 평균 3.0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가구들이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적 가구의 빈곤상태는 여성가구와 남성가구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5-38〉 성별로 본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소 득 감 소	30만원 미만	응답	34	76	110
		%	38.2	23.8	26.9
	30~50 만원 미만	응답	21	57	78
		%	23.6	17.8	19.1
	50~100 만원 미만	응답	26	115	141
		%	29.2	35.9	34.5
	100~150 만원 미만	응답	5	50	5
		%	5.6	15.6	13.4%
	150~200 만원 미만	응답	2	9	11
		%	2.2	2.8	2.7
	200만원 이상	응답	1	13	14
		%	1.1	4.1	3.4
	전체	응답	89	320	09
		%	100.0	100.0	100.0

p = .012

가구소득의 감소액은 한 가구의 경제적 타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응답자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감소액은 57만 7천원이고, 이 가운데 여성실업장애우의 소득감소는 41만 6천원, 남성은 62만 6천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실업장애우의 소득감소폭이 크다는 사실은 그만큼 가구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남성응답자의 51.6%가 50만원미만의 소득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51.8%가 50만원 미만의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의 소득감소도 남성의 22.8%, 반면 여성의 경우 8.9%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감소의 폭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적다는 것이 여성의 경우 그 심각성이 적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소득 자체가 남성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었으므로 감소폭도 적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⑤ 최저생계비 규모

〈표5-39〉 성별 최저생계비 규모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최저 생계비	30만원 미만	응답	11	29	40
		%	7.4	6.0	6.3
	30~50 만원 미만	응답	44	96	140
		%	29.7	19.8	22.1
	50~100 만원 미만	응답	81	282	363
		%	54.7	58.2	7.3
	100~150 만원 미만	응답	10	61	71
		%	6.8	12.6	11.2
	150~200 만원 미만	응답	1	12	13
		%	0.7	2.5	2.1
	200만원 이상	응답	1	5	6
		%	0.7	1.0	.9
전체	응답	148	485	633	
	%	100.0	100.0	100.0	

p = .051

최저생계비는 전체 평균 62만원으로 응답되나, 이중 여성실업자 가구는 55만 5천원으로, 반면 남성장애우가구는 64만원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의미일 뿐이고 실제 가구수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른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요구되는 바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30만원이 될 때 최저생계비수준은 충족된다고 보는 여성실업가구는 7.4%인데 비하여, 실제 30만원미만의 소득상태에 놓인 가구는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59.4%에 이르므로 이로부터도 많은 여성장애우의 가구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를 50만원선까지 확대하여 보면 이로부터 최저생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여성실업가구는 25.8%인데 비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88.4%에 해당하므로 빈곤가구에 놓은 여성실업장애우의 가구상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30만원이 될 때 최저생계비수준은 충족된다고 보는 남성실업가구는 6.0%인 데 비하여, 실제 30만원미만의 소득상태에 놓인 가구는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58.2%에 이르므로 이로부터도 많은 여성장애우의 가구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를 50만원선까지 확대하여 보면 이로부터 최저생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남성실업가구는 37.1%인데 비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85.7%에 해당한다.

이를 좀더 분명히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 및 남성실업장애우 가구의 현재 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비교하여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생계비수준에 미달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적하여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여성실업장애우응답자 138명 중 82.6%에 해당하는 114명

이 주관적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54명 중 382명, 84.1%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40〉 실업장애우의 성별 현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단위: 명, %)

성별	현재의 총가구소득	현재의 총가구소득					전체		
		30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 150만원	150~ 200만원		200만원 이상	
여 성	30만원 미만	8	0	0	0	0	0	8	
		3~50만원 미만	36	4	0	1	0	0	41
	50~100만원 미만	38	29	10	0	0	0	77	
		100~150만원 미만	0	5	4	0	0	1	10
	150~200만원 미만	0	0	0	1	0	0	1	
		200만원 이상	0	0	0	1	0	0	1
	합계	금간계	82	38	14	3	0	1	138
		최저생계이하가구 (비중)	74 (90.2)	34 (89.5)	4 (28.6)	2 (66.7)	0 (0.0)	0 (0.0)	114 (82.6)
	남 성	30만원 미만	19	3	0	1	0	0	23
			30~50만원 미만	69	13	3	1	0	0
		50~100만원 미만	155	87	26	1	1	0	270
			100~150만원 미만	16	20	18	4	0	0
150~200만원 미만		3	1	8	0	0	0	12	
		200만원 이상	2	2	0	1	0	0	5
합계		금간계	264	126	55	8	1	0	454
		최저생계이하가구 (비중)	245 (92.8)	110 (87.3)	26 (47.3)	1 (12.5)	0 (0.0)	0 (0.0)	382 (84.1)

3) 구직활동의 실태

①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5-41〉 성별 구직활동 희망 여부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가?	예	응답	99	376	475
		%	64.3	73.7	71.5
	아니오	응답	55	134	189
		%	30.7	26.3	28.5
전 체	응답	154	510	664	
	%	100.0	100.0	100.0	

p=.016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실업자의 30.7%, 남성실업자의 26.3%는 구직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이른바 '실망실업자' 상태이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28.5%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표5-42〉 성별구직희망여부

항 목	유형별	일자리를 원하는가?		전 체
		원함	원하지 않음	
여성	IMF형 실직자	15	1	16
	IMF 이전 실직자	42	14	56
	만성실업자	42	40	82
	소계	99	55	154
남성	IMF형 실직자	97	11	108
	IMF 이전 실직자	184	46	230
	만성실업자	95	77	172
	소계	376	134	610

p = .057

여성실업장애우 중에서 만성적인 실업자를 제외하고 IMF 위기를 전후하여 일자리를 갖고 있던 자 가운데 실망실업상태에 빠진 자는 15명으로 여성실업장애우 전체의 9.7%, 일자리를 원치않는 자 가운데 27.2%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는 57명으로 전체 실업장애우의 9.2%, 일자리를 원치 않는 자 가운데 42.5%에 이른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만성실업자이면서도 일자리를 원하는 자는 여성장애우의 경우 전체 만성실업자의 52.5%에 이르는 42명, 남성의 경우 55.2%에 달하는 95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전히 만성실업장애우 중 과반수 이상이 일할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대책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본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5-43〉 성별 구직희망이유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일을 않음	응답 23 % 22.5	116 30.	139 29.1
	배우자, 가족의 실직	응답 11 % 10.8	24 6.4	35 7.3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응답 38 % 37.3	118 31.5	156 32.7
	빛때문	응답 11 % 10.8	55 14.7	66 3.8
	본인의 학비, 용돈때문	응답 8 % 7.8	29 7.7	37 7.8
	기타	응답 9 % 0.2	33 8.8	44 9.2
	전체	응답 99 % 100.0	375 100.0	477 100.0

p = .299

현재 여성 및 남성실업장애우들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직을 원하는 이유로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라거나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음' 것 자체 때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37.3%, 22.5%로 앞의 두가지 사유에 대하여 응답율을 보인 반면, 남성은 31.5, 30.9%로 되어 상대적으로 여성은 소비지출에 대해, 남성은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실직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실업장애우가 응답자의 10.8%, 만성장애우는 6.4%에 해당되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가 가구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애우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표5-44〉 성별로 본 구직을 원치 않는 경우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응답	25	80	105
		%	46.3	62.5	57.7
	취업가능성 없음	응답	13	18	31
		%	24.1	14.1	17.0
	건강악화	응답	11	28	39
		%	20.4	21.9	21.4
	기타	응답	5	2	7
		%	9.3	1.6	3.8
전 체	응답	54	128	182	
	%	100.0	100.0	100.0	

p = .669

구직을 원치 않는 사유로 실업장애우가 가장 먼저 꼽는 사유는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남성장애우의 경우 62.5%라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46.3%에 이른다. 또한 취업가능성이 없는 것과 건강악화에 따른 취업의사의 포기도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었다. 여성의 24.1%, 20.4%, 남성의 14.1%, 21.9%가 각각 앞의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엄밀히 말할 때 취업경험이 있던 장애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의 장애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현재 장애우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애정도와 취업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5-45〉 성별 구직활동 유형

구 분	유형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명	%	명	%
가. 실직자모임 및 방문	남성	100	19.4	416	80.6
	여성	27	17.1	131	82.9
나. 친지나 친구와 접촉	남성	169	32.8	347	67.2
	여성	37	23.4	121	76.6
다. 공공직업안정기관 접촉	남성	180	34.9	336	65.1
	여성	35	22.2	153	(77.8)
(노동부인터넷사이트)	남성	(13)	(2.5)	(503)	(97.5)
	여성	(3)	(1.9)	(155)	(98.1)
(노동부 지방사무소)	남성	(76)	(14.7)	(440)	(85.3)
	여성	(20)	(12.7)	(138)	(87.3)
(인력은행)	남성	(47)	(9.1)	(469)	(91.9)
	여성	(6)	(3.8)	(152)	(96.2)
(고용안정센터)	남성	(63)	(12.2)	(453)	(87.8)
	여성	(13)	(8.2)	(145)	(91.8)
(시군구 취업센터)	남성	(127)	(24.6)	(389)	(75.4)
	여성	(23)	(14.6)	(135)	(85.4)
(산업인력관리공단)	남성	(25)	(4.8)	(491)	(95.2)
	여성	(5)	(3.2)	(153)	(96.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성	(174)	(33.7)	(342)	(66.3)
	여성	(40)	(25.3)	(118)	(74.7)
라. 민간직업안내소 접촉	남성	65	12.9	451	87.1
	여성	10	6.3	148	93.7
마. 사업체 직접 연락	남성	110	21.3	406	78.7
	여성	25	15.8	133	84.2
바. 장애인단체 등 방문	남성	223	43.2	293	56.8
	여성	58	36.7	100	63.3
사. 장애인채용박람회 방문	남성	89	17.2	407	82.8
	여성	18	11.4	140	88.6
아. 신문 등의 구인광고	남성	79	15.3	437	84.7
	여성	28	17.7	130	82.3

일반적으로 실업장애우들은 장애우단체를 통하여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성실업장애우의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 소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여성장애우의 경우 거의 모든 구직활동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이용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인 여성실직장애우들에게 필요한 구직 정보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라는 사실과 실적이 라는 사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여성장애우의 적극적인 구

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여성장애우들을 위해 취업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시군구취업센터에 대한 이용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기관의 향후 적극적인 운용과 기능향상에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구직활동 시의 가장 어려운 점

〈표5-46〉 성별로 본 구직활동시 어려운점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구직 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	적당한 일거리 부재	응답 26 % 24.5	156 38.5	182 35.6
	취업 정보의 부재	응답 6 % 5.7	17 4.2	23 4.5
	학력, 기증, 자격 이 부적합	응답 13 % 12.3	46 11.4	59 11.5
	장애	응답 49 % 46.2	163 40.2	212 41.5
	적은 보수	응답 3 % 2.8	3 0.7	6 1.2
	고령	응답 3 % 2.8	2 0.5	5 1.0
	성차별	응답 5 % 4.7	15 3.7	20 3.9
	기타	응답 1 % 0.9	3 0.7	4 0.8
	전 체	응답 106 % 100.0	405 100.0	511 100.0

p = .053

구직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실직장애우들은 '장애 때문'이 41.5%, '일거리가 없어서'가 35.6%로 나타나고 이중 여성장애우 응답자는 46.2%, 24.5%, 남성장애우 응답자는 40.2%, 38.5%로 답하였다. 이는 여성장애우가 남성에 비하여 장애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남성이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장애우에게 제공되는 작업의 종류가 단순작업형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학력이나 기능, 자격 등의 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10%정도의 반응율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적합한 직종의 개

발과 장애우라는 편견으로 인한 취업의 저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⑥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5-47〉 성별로 본 희망 취업직종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직 전직종	전문가, 기술자	응답 10 % 13.0	30 9.8	40 10.4
	관리행정직	응답 10 % 13.0	39 12.8	49 12.8
	사무직	응답 14 % 18.2	70 22.9	84 21.9
	서비스판매직	응답 0 % 0.0	3 1.0	3 0.8
	농업, 어업	응답 4 % 18.2	64 20.9	78 0.4
		응답 19 % 24.7	50 16.3	69 18.0
	가능직	응답 19 % 24.7	50 16.3	69 18.0
	단순직	응답 0 % 0.0	5 1.6	5 1.3
	노점, 좌판	응답 0 % 0.0	7 2.3	7 1.8
	아무거나	응답 10 % 13.0	38 12.4	48 12.5
	전 체	응답 77 % 100.0	306 100.0	383 100.0

p = .196

취업을 원하는 여성장애우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단순노무직을 24.5%로 가장 많이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나 기계조립·기능직을 공히 18.2%로 원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 22.9%, 기계조립·기능직 20.9%, 그리고 단순노무직 16.3%의 순서와는 약간 다른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떨어지는 여성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며 남성의 경우는 기술이 요구되는 기계조립·기능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⑦ 희망업종

〈표5-48〉 성별 희망업종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희 망 종	서비스업	응답	33	144	168
		%	42.9	47.2	44.0
	제조업	응답	29	98	127
		%	37.7	32.1	33.3
	농림어업	응답	0	4	4
		%	0.0	1.3	1.1
아무거나	응답	15	59	74	
	%	19.5	19.3	19.4	
전 체	응답	77	305	382	
	%	100.0	100.0	100.0	

p = .273

희망업종으로 남녀 모두 서비스업을 압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실업자 모두 서비스업종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각기 42.9%와 47.2%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37.7% 및 32.1%로 제조업이 선호된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없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하는 절실히 일자리를 원하는 자도 여성장애우 19.5%, 남성장애우 19.3%씩 됨으로써 취업에 대한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음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⑧ 희망 종사형태

〈표5-49〉 희망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희 망 종 사 형태	정규직	응답	55	218	273
		%	71.4	71.0	71.1
	임시직	응답	4	2	6
		%	5.2	.6	1.6
	일용직	응답	7	33	40
		%	9.1	10.8	10.4
	자영업자	응답	6	34	40
		%	7.8	11.1	10.4
	무급가족종사자	응답	0	1	1
		%	0.0	0.3%	0.3%
	아무거나	응답	5	19	24
		%	6.5	6.2	6.3
전체	응답	77	307	384	
	%	100.0	100.0	100.0	

p = .030

대부분의 실업장애우는 모든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취업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우 71.4%, 남성장애우 71.0%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일정자본이 필요한 자영업의 경우 각기 7.8%와 11.1%가 이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⑨ 희망 보수 수준

〈표5-50〉 성별 희망보수 수준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희 망 보 수	30만원 미만	응답	2	2	4
		%	2.2	0.6	.9
	30~50만원 미만	응답	13	16	29
		%	14.3	4.4	6.4
	50~100만원 미만	응답	66	250	316
		%	72.5	69.4	70.1
	100~150만원 미만	응답	10	79	89
		%	11.0	21.9	19.7
	150~200만원 미만	응답	0	7	7
		%	0.0	1.9	1.6
	200만원 이상	응답	0	6	6
		%	0.0	1.7	1.3
전체	응답	91	360	451	
	%	100.0	100.0	100.0	

p = .001

실업장애우가 원하는 임금의 수준은 평균 74만 7천원이며 남성 장애우가 여성장애우보다 기대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우의 경우는 평균 기대임금수준이 62만 4천원이다. 여성장애우가 가장 많이 원하는 임금의 수준은 50-100만원수준이며 50만원이하의 임금에 대하여도 16.5%의 여성실업장애우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우의 경우 아예 150만원을 넘는 임금에 대하여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장애우는 69.4%가 50-100만원을 원하고 있으며 100-150만원수준도 21.9%가 원하며 그 이상의 수준은 3.6%만이 원하고 있다. 한편 50만원이하의 수준은 남성응답자의 5.0%만이 원하는 실정이다.

3.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①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5-51〉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생활보호 사업에 알고 있는가	예	응답	97	366	463
		%	62.6	71.9	69.7
	아니오	응답	58	143	201
		%	37.4	28.1	30.3
전 체	응답	155	509	664	
	%	100.0	100.0	100.0	

p=.018

②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5-52〉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생활보호사업 신청여부	신청	응답	80	285	365
		%	71.4	69.9	70.2
	미신청	응답	32	123	155
		%	28.6	30.1	29.8
전 체	응답	112	408	520	
	%	100.0	100.0	100.0	

p=.422

③ 신청한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5-53〉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어느생활 보호사업을 신청하였나	일반생활 보호사업	응답	58	196	254
		%	72.5	70.0	70.6
	한시적생활 보호사업	응답	22	84	106
		%	27.5	30.0	29.4
전 체	응답	80	280	360	
	%	100.0	100.0	100.0	

p=.388

④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 여부

〈표5-54〉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수혜	응답	63	217	280
		%	76.8	76.2	76.3
	탈락	응답	19	68	87
		%	23.2	23.9	23.7
전 체	응답	82	285	367	
	%	100.0	100.0	100.0	

p=.513

⑤ 지원액의 규모(월 기준)

〈표5-55〉 지원액의 규모-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원액	5만원 미만	응답	1	11	12
		%	1.8	5.2	4.5
	5~10 만원 미만	응답	8	29	37
		%	14.3	13.7	13.8
	10~20 만원 미만	응답	21	66	87
		%	37.5	31.1	32.5
	20~30 만원 미만	응답	20	65	85
		%	35.7	30.7	31.7
	30~40 만원 미만	응답	4	25	29
		%	7.1	11.8	10.8
	40만원 이상	응답	2	16	18
		%	3.6	7.5	6.7
	전체	응답	56	212	268
		%	100.0	100.0	100.0

p=.030

⑥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표5-56〉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이유-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생활보호 사업 미수혜 이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응답 14 % 30.4%	44 24.2	58 25.4
	신청방법을 몰라서	응답 11 % 23.9	40 22.0	51 22.4
	소득기준액 초과	응답 8 % 17.4	20 11.0	28 12.3
	재산기준액 초과	응답 1 % 2.2	8 4.4	9 3.9
	호적상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응답 1 % 2.2	14 7.7	15 6.6
	절차가 까다로와	응답 9 % 19.6	34 18.7	43 18.9
	자존심때문에	응답 0 % 0.0	5 2.7	5 2.2
	기타	응답 2 % 4.3	17 9.3	19 8.3
	전 체	응답 46 % 100.0	182 100.0	228 100.0

p = .495

⑦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5-57〉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생활보호 사업 미수혜 이유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응답 40 % 45.5	155 46.8	195 46.5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응답 29 % 33.0	98 29.6	127 30.3
	신청 및 수급 행정 절차 너무 까다로움	응답 14 % 15.9	61 18.4	75 17.9
	기타	응답 5 % 5.7	17 5.1	22 5.3
	전 체	응답 88 % 100.0	331 100.0	419 100.0

p = .905

⑧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여성 및 남성실업장애우와 생활보호사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은 매우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실제 집행과정은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놓여있다.

첫째로, 우선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모르는 여성실업장애우가 37.4%, 남성장애우는 28.1%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제도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우가 상대적으로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여성장애우 97명 가운데 신청한 여성장애우는 80명으로서 82.5%의 신청율을 보인다. 또한 남성의 경우 408명 가운데 69.9%인 285명만이 신청하여 신청에 있어서는 일단 제도에 대한 인지도만 있다면 여성장애우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다시 이들은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여성은 72.5%, 27.5%의 비율로, 남성은 70.0%, 30.0%로 각기 신청하였으며,

넷째로, 여성신청자 가운데 63명만이, 남성신청자 가운데 217명만이 사업대상자로 되었고 나머지는 탈락하였으므로 탈락율이 각기 21.3%, 23.9%에 달하며

다섯째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19만 4천원이고 여섯째로,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남녀가 거의 유사하여 '해당유무를 본인이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또는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곱째로, 또한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것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 데에는 남녀가 다름이 없다.

2) 공공근로사업

① 공공근로사업의 인지 여부

〈표5-58〉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인지 여부	알고있음	응답 121 % 78.1	380 76.2	501 76.6
		응답 34 % 21.9	119 23.8	153 23.4
	모름	응답 155 % 100.0	499 100.0	651 100.0
		응답 155 % 100.0	499 100.0	651 100.0

p = .354

②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표5-59〉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신청 여부	신청	응답	37	146	183
		%	24.5	30.8	29.3
	미신청	응답	114	328	442
		%	75.5	69.2	70.7
전 체		응답	151	474	625
		%	100.0	100.0	100.0

p = .083

③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표5-60〉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참여 여부	참여함	응답	1	47	58
		%	27.5	30.9	30.2
	신청하였으나 탈락	응답	26	89	115
		%	65.0	58.6	59.9
	중도포기	응답	3	16	19
		%	7.5	10.5	9.9
전 체		응답	40	152	192
		%	100.0	100.0	100.0

p = .728

④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5-61〉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응답	19	44	63
		%	16.0	12.1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22	55	77
		%	18.5	15.2	16.0
	신청해도 안될것같아서	응답	9	33	42
		%	7.6	9.1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1	2	3
		%	0.8	0.6	0.6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응답	63	197	260
		%	52.9	54.3	53.9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어서	응답	0	14	14	
	%	0.0	3.9	2.9	
기타	응답	5	18	23	
	%	4.2	5.0	4.8	
전 체		응답	119	363	482
		%	100.0	100.0	100.0

p = .347

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성 및 남성 실업장애우에게 갖는 의의를 정리한다면,

첫째로,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모르는 여성실업장애우가 전체의 21.9%, 남성장애우가 23.9%에 해당되며

둘째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여성은 조사대상자의 24.5%인 37명이고 이중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장애우는 신청자의 29.7%인 11명, 이는 전체 조사대상여성장애우의 7.0%에 불과하다. 특히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70.3%에 해당함으로써 여성 장애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문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장애우는 30.8%인 146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47명만이 참여하였으며 따라서 99명이 탈락하여 67.8%가 탈락하였다. 그러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셋째로,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우들은 그 사유를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여성응답자의 52.9%, 남성응답자의 54.3%에 이르러 가장 많은 응답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신청할 자격이 안되거나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등이 응답된 점에서는 남녀응답자간의 차이가 없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다.

3)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신청 여부

〈표5-62〉 실업급여 신청 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현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응답 2 % 6.7	7 5.2	8 4.9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응답 2 % 6.7	7 5.2	10 6.1
	퇴직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응답 6 % 20.0	50 37.3	56 34.4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응답 3 % 10.0	10 7.5	13 8.0
	신청하지 않음	응답 17 % 56.7	60 44.8	76 46.6
	전 체	응답 30 % 100.0	34 100.0	163 100.0

p = .513

②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표5-63〉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7 % 30.4	30 29.7	36 29.5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3 % 13.0	20 19.8	23 18.9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격이 안되어서 (자발적이직, 해고)	응답 1 % 4.0	10 9.9	11 9.0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9 % 39.1	19 18.8	27 22.1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1 % 0.3	9 8.9	10 8.2
	곧 취직될 것 같아서	응답 1 % 4.3	4 4.0	5 4.1
	기타	응답 1 % 4.3	9 8.9	10 8.2
	전 체	응답 23 % 100.0	101 100.0	122 100.0

p = .480

③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표5-64〉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직업 훈련경험 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9 % 6.6	39 8.9	48 8.4
	받고있다	응답 3 % 2.2	6 1.4	9 1.6
	받은적이 없다	응답 125 % 91.2	392 89.7	517 90.1
전 체	응답 137 % 100.0	437 100.0	574 100.0	

p = .559

④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표5-65〉 공공직업훈련 참여종류-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직업 훈련내용	실업자재 취직훈련	응답 3 % 23.1	7 13.5	10 15.4
	고용촉진훈련	응답 1 % 7.7	9 17.3	10 15.4
	대학등 직업훈련	응답 0 % 0.0	2 3.8	2 3.1
	기능사 양성훈련	응답 2 % 15.4	8 15.4	10 15.4
	영농 희망자훈련	응답 1 % 7.7	3 5.8	4 6.2
	농어민고용 촉진훈련	응답 0 % 0.0	2 3.8	2 3.1
	실직자 창업훈련	응답 0 % 0.0	3 5.8	3 4.6
	복지권, 장애인 체중에서의 훈련	응답 5 % 38.5	15 28.8	20 30.8
	기타	응답 1 % 7.7	3 5.8	4 6.2
	전 체	응답 13 % 100.0	52 100.0	65 100.0

p = .257

⑤ 직업훈련 희망 여부

〈표5-66〉 직업훈련 희망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직업훈련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	72	228	300
		%	51.4	50.9	51.0
	아니다	응답	28	80	108
		%	20.0	17.9	18.4
	잘모르겠다	응답	40	140	180
		%	28.6	31.3	30.6
전 체		응답	140	448	588
		%	100.0	100.0	100.0

p = .770

⑥ 희망 직업훈련 종류

〈표5-67〉 희망직업훈련 종류-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희망직업 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8	48	56
		%	12.1	19.8	18.2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	응답	12	38	50
		%	8.2	15.7	15.2
	임금근로자의 취업 을 위한 양성훈련	응답	7	50	57
		%	10.6	20.7	18.5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응답	7	18	25
		%	10.6	7.4	8.1
	컴퓨터관련교육	응답	26	73	99
		%	39.4	30.2	32.1
	기타	응답	6	15	21
		%	9.1	6.2	6.8
전 체		응답	66	242	308
		%	100.0	100.0	100.0

p = .194

⑦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실업 후 제1차적으로 적용되어 생활유지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는 남녀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여성장애우 응답자 전체의 2.5%인 4명만이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장애우 응답자는 그 수치가

가 10.4%인 14명이 되어 응답자 대부분은 실업급여의 신청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체는 장애우의 생계유지에 거의 관계가 없는 제도로 해석된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는

첫째, 직업훈련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여성은 12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여성장애우의 7.6%에 해당하며, 남성은 45명, 10.3%로서 그 훈련내용도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주로 받고 있다.

둘째,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우는 72명에 달해 45.6%에 해당하였고, 남성의 경우는 228명, 50.9%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백히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도 여성이 20.0%인 28명, 남성의 경우 17.9%인 80명이 존재한다.

셋째,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에는 컴퓨터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데 이외에도 여성은 주로 자영업자로서의 사업능력향상훈련, 창업을 위한 훈련 등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은 임금근로자로서의 근로능력향상과 창업을 위한 훈련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4) 실업자 대부사업

①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5-68〉 대부사업인지여부-성별-성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대부사업 인지여부	알고 있음	응답	70	248	318
		%	44.9	50.2	48.9
	모름	응답	86	246	332
		%	55.1	49.8	51.1
전 체		응답	156	494	650
		%	100.0	100.0	100.0

p = .142

② 대부사업 신청 여부

〈표5-69〉 대부사업 신청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대부사업 신청여부	신청	응답	17	70	87
		%	21.8	26.1	25.1
	미신청	응답	61	198	259
		%	78.2	73.9	74.9
전 체		응답	78	268	346
		%	100.0	100.0	100.0

p = .268

③ 신청대부사업 종류

〈표5-70〉 신청대부사업 종류-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신청대부 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응답	6	34	40
		%	35.3	45.3	43.5
	주택자금 (전세금융자 포함)	응답	5	15	20
		%	29.4	20.0	21.7
	영업자금	응답	5	21	26
		%	29.4	28.0	28.3
	관리·기술직 실업자등의 소규모영업지원	응답	0	5	5
		%	0.0	6.7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1	0	1
		%	5.9	0.0	1.1
전 체		응답	17	75	92
		%	100.0	100.0	100.0

p = .169

④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표5-71〉 대부신청 후 실제대출여부-성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대부신청 후 대출여부	받은	응답	4	24	28
		%	20.0	30.4	28.3
	못받은	응답	16	55	71
		%	80.0	69.6	71.7
전 체		응답	20	79	99
		%	100.0	100.0	100.0

p = .266

⑤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5-72〉 대출받지 못한 이유-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11	31	42
		%	16.9	9.7	11.0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응답	24	56	80
		%	6.9	17.6	20.9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28	141	169
		%	43.1	44.3	44.1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2	57	59
		%	3.1	17.9	15.4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0	21	21
		%	0.0	6.6	5.5
구직등록을 하지 않 아서	응답	0	4	4	
	%	0.0	1.3	1.0	
기타	응답	0	8	8	
	%	0.0	2.5	2.1	
전 체		응답	65	318	383
		%	100.0	100.0	100.0

p = .347

⑥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표5-73〉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응답	10	45	55
		%	14.1	19.1	18.0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3	3	6
		%	4.2	1.3	2.0
	자격요건이 안되서	응답	12	49	61
		%	16.9	20.9	19.9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응답	22	66	88
		%	31.0	28.1	28.8
	상환부담때문에	응답	13	45	58
		%	18.3	19.1	19.0
별도움이 안될 것같아서	응답	5	19	21	
	%	7.0	8.1	7.8	
기타	응답	6	8	14	
	%	8.5	3.4	4.6	
전 체	응답	71	235	306	
	%	100.0	100.0	100.0	

p = .329

⑦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5-74〉 대부사업의 문제점-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대부사업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응답	11	31	42
		%	16.9	9.7	11.0
	재산요건담보등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응답	24	56	80
		%	6.9	17.6	20.9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응답	28	141	169
		%	43.1	44.3	44.1
	이자율이 높음	응답	2	57	59
		%	3.1	17.9	15.4
	대부후 상환까지 기간이 짧음	응답	0	21	21
		%	0.0	6.6	5.5
모르겠다	응답	0	4	4	
	%	0.0	1.3	1.0	
기타	응답	0	8	8	
	%	0.0	2.5	2.1	
전 체	응답	65	318	383	
	%	100.0	100.0	100.0	

p = .032

⑧ 대부사업에 대한 평가

실업자 대부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장애우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사업자체를 모르는 여성장애우가 응답조사자의 55.1%에 이르는 86명이고 남성은 50.2%인 248명으로서 약 반수정도가 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17명으로서 이를 인지한 여성장애우의 19.8%, 전체 응답 여성장애우의 10.8%에 해당하였으며, 남성장애우는 70명이 신청하였고 이는 인지한 장애 중 28.2%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남성장애우의 신청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부신청후 대출을 받은 여성장애우는 겨우 4명에 불과하여 대부사업의 수혜자는 전체 여성장애우응답자의 2.5%에 그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다. 이들이 받은 대부금액도 평균 700만원선이다. 남성장애우는 대출받은 자가 24명이며 이는 전체 남성장애우의 5.8%에 해당하여 남성장애우가 대출받은 정도가 더 높다.

넷째, 대부를 받지 못한 사유로는 여성장애우의 경우는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남성장애우의 경우는 담보가 없어서가 그 주된 이유가 되었다.

다섯째, 그러나 대부신청 자체를 기피한 장애우의 경우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상환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여성실업장애우가 지적인 대부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산요건이나 담보설정, 보증인이 요건 등이 너무 까다로운 점이였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① 긴급의료비 지원

〈표5-75〉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긴급 의료비 지원	매우 필요	응답	71	250	321
		%	49.7	55.8	54.3
	필요	응답	51	116	167
		%	35.7	25.9	28.3
	보통	응답	15	57	72
		%	10.5	12.7	12.2
	불필요	응답	4	18	22
		%	2.8	4.0	3.6
	전혀 불필요	응답	2	7	9
		%	1.4	1.6	1.5
전 체	응답	143	448	591	
	%	100.0	100.0	100.0	

p = .256

② 긴급식품권 지원

〈표5-76〉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긴급 식품권 지원	매우 필요	응답	48	171	219
		%	34.3	38.4	37.4
	필요	응답	56	164	220
		%	40.0	36.9	37.6
	보통	응답	29	84	113
		%	20.7	18.9	19.3
	불필요	응답	6	20	26
		%	4.3	4.5	4.4
	전혀 불필요	응답	1	6	7
		%	0.7	1.3	1.2
전 체	응답	140	445	585	
	%	100.0	100.0	100.0	

p = .858

③ 구직활동비 보조

〈표5-77〉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구직 활동비 보조	매우 필요	응답	52	200	252
		%	37.4	45.2	43.4
	필요	응답	49	138	187
		%	35.3	31.2	32.2
	보통	응답	24	82	106
		%	17.3	18.6	18.2
	불필요	응답	10	13	23
		%	7.2	2.9	4.0
	전혀 불필요	응답	4	9	13
		%	2.9	2.0	2.2
전 체	응답	139	442	581	
	%	100.0	100.0	100.0	

p = .121

④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표4-78〉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세금, 공과금 감면/면제	매우 필요	응답	86	251	337
		%	62.3	56.5	57.9
	필요	응답	34	135	169
		%	24.6	30.4	29.0
	보통	응답	13	43	56
		%	9.4	9.7	9.6
불필요	응답	4	12	16	
	%	2.9	2.7	2.7	
전혀 불필요	응답	1	3	4	
	%	0.7	0.7	0.7	
전 체	응답	138	444	582	
	%	100.0	100.0	100.0	

p = .765

⑤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5-79〉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필요성-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매우 필요	응답	44	169	213
		%	33.1	39.8	38.2
	필요	응답	42	135	177
		%	31.6	31.8	31.7
	보통	응답	32	91	123
		%	24.1	21.4	22.0
불필요	응답	12	21	33	
	%	9.0	4.9	5.9	
전혀 불필요	응답	3	9	12	
	%	2.3	2.1	2.2	
전 체	응답	133	425	558	
	%	100.0	100.0	100.0	

p = .358

⑥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표5-80〉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의료대책중 가장 필요한 것	의료보험혜택 기간 연장	응답	9	28	37
		%	6.2	6.2	6.2
	월의료보험료 50% 감면	응답	36	107	143
		%	24.7	23.6	23.8
	보건소의 무료(실비)치료	응답	31	81	112
		%	21.2	27.8	18.7
	긴급의료비지원	응답	36	142	178
		%	24.7	31.3	29.7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응답	30	77	107
		%	20.5	17.0	17.8
기타	응답	4	19	23	
	%	2.7	4.2	3.8	
전 체	응답	146	454	600	
	%	100.0	100.0	100.0	

p = .347

⑦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긴급의료비, 긴급식품비 등 몇가지를 응답자에게 제시해 본 결과

첫째, 긴급의료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성실업장애우의 85.4%, 긴급식품비는 74.3%가, 구직활동비 보조는 72.7%가, 제세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은 86.9%가, 다양한 구인정보제공은 64.7%가 동의하였다. 한편 남성장애우의 경우는 각기 81.7%, 75.3%, 76.4%, 86.9% 및 71.6% 등으로 나타나 제세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에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 긴급의료비 지원과 월의료보험료의 50% 감면이 여성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대책인 것으로, 그리고 보건소의 무료진료, 보장구 무료 제공 및 수리 등이 다음으로 요구되는 대책으로 응답되었다. 남성장애우는 긴급의료비의 지원, 보건소의 무료진료 등이 절실한 의료대책으로 꼽혔다.

한편 이들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의 정도가 어떤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1에 가까울수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성 및 남성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는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제세공과금의 감면이 가장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었고 긴급의료비, 긴급식품비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과 관련된 구직활동비 지원이나 다양한 구인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다소 떨어진다.

〈표5-81〉 실업대책에 대한 필요성-성별

	간급의료비	간급식료권	구직활동비보조	제세공과금감면	다양한구인정보
여성	1.70	1.97	2.03	1.55	2.16
남성	1.70	1.94	1.85	1.61	1.98
전체	1.70	1.94	1.90	1.59	2.02
p값	0.921	0.683	0.066	0.494	0.076

6)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①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5-82〉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	응답 37	151	188
	에 더 중점을 두어야	% 25.0	31.6	30.0
	생활안정대책에	응답 111	327	438
	더 중점을 두어야	% 75.0	68.4	70.0
전 체	응답	148	478	626
	%	100.0	100.0	100.0

p = .076

②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4-83〉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여성	남성	
고용안정 대책 중 핵심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응답 9	35	44
		% 017.3	15.5	15.8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망 확충	응답 3	28	31
		% 5.8	12.4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응답 20	102	122
		% 38.5	45.1	43.9
	기업 고용안정지원	응답 9	19	28
		% 17.3	8.4	10.1
	개인의 사업자금융자	응답 10	41	51
		% 19.2	18.1	18.3
기타	응답 1	1	2	
	% 1.9	0.4	0.7	
전 체	응답	52	226	278
	%	100.0	100.0	100.0

p = .234

③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5-84〉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성별

항 목	유형별	성 별 유 형		전 체
		남성	여성	
생활안정 대책 중 핵심	공공근로사업	응답 4	17	21
		% 3.3	4.4	4.2
	고용보험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응답 1	4	5
		% 0.8	1.0	1.0
	의료보험료 50%지원	응답 5	18	23
		% 4.1	4.7	4.6
	생활보호확대	응답 56	148	204
		% 46.3	38.6	40.5
	생계비대부사업 확대	응답 25	58	83
		% 20.7	15.1	6.5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응답 20	88	108
		% 16.5	23.0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9	44	53
		% 7.4	11.5	10.5
	노숙자 보호	응답 0	2	2
		% 0.0	0.5	0.4
각종상담사업	응답 1	3	4	
	% 0.8	0.8	0.8	
기타	응답 0	1	1	
	% 0.0	0.3	0.2	
전 체	응답	121	383	504
	%	100.0	100.0	100.0

p = .154

④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이 된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은 현재의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현재의 실업대책을 고용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고 극단적으로 물었을 때 여성장애우의 경우는 25.0%와 75.0%의 차이로, 남성장애우는 31.6%, 68.4%의 차이로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해준다.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당연히 가장 우선시되며 이외에 개인 사업자 금융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차례로 요구하는 데 이는 남녀 공히 나타나는 응답결과이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여성장애우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를 가장 먼저 선호하였고

